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전화 상담·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마련에 따른 협조 요청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**「전화 상담 ·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」**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일선 의료기관에 즉시 전파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(안내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전화 상담 ·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>

◇ **(목적)** ▲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방지
▲ 의료기관으로의 감염 유입 예방
▲ 만성질환자, 노약자, 고위험군 환자 등의 감염 최소화

◇ **(추진방안)**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, 전화 상담 · 처방 및 대리처방 추진

◇ **(추진근거)**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9조, 제40조 및 제44조
「의료법」 제59조, 「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◇ **(시행시기)** '20.2.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(코로나19 전파양상을 보아가며 결정)

붙임 :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. 끝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수신자 17개 시도, 전국 보건소, 6개 보건의약단체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(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)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(급여관리실)

보건주사 **김기만** 자원관리총괄팀장 전결 2020. 2. 23. **정경실**

협조자

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11 (2020. 2. 23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(정부세종청사 10동) / http://ncov.moh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2411 팩스번호 044-202-3924 / kiman1202@korea.kr / 비공개(5)